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629호 2010. 3. 25. (목)

조	례
---	---

- 조례 제54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 조례 제54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조례 제545호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2
- 조례 제546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조례 제547호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18
- 조례 제548호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20
- 조례 제549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 25
- 조례 제550호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28
- 조례 제551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32
- 조례 제552호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34

규	칙
---	---

- 규칙 제33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38
- 규칙 제331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46
- 규칙 제332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51

훈	령
---	---

- 훈령 제15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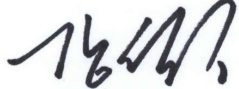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 안 내 문 】

- 복구 전자공보는 매주 월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매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구 전자공보 확인 방법  
⇒ 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 → 행정정보 → 알림마당 → 복구공보에서 열람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 복구 편집 : 문화홍보과 (☎ 219-7207 행정 7207)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3호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회계정보과·지방세과·민원지적과 및 환경위생과”를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세무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4. 문화관광, 문화의 집 지원, 체육·청소년, 예술공연
5. 도서관 관리·운영,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6. 지방세정 업무에 관한 사무
7. 민원실 운영, 가족관계등록, 여권, 지적, 지가조사, 부동산관련 업무에 관한 사무

제5조의2를 제6조로 하고, 제목 “(생활지원국에 두는 과)”를 “(생활경제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조의2) 제1항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환경미화과, 평생교육과”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조의2) 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5조의2) 제

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경제 진흥, 물가안정, 소비자 보호, 연료수급, 기업지원 육성, 노동 행정에 관한 사무
4. 간이상수도 등 수도에 관한 사무
5. 환경보호, 대기보전, 수질보전 및 환경허가에 관한 사무
6.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사무
7. 영상물 지도, 보건 및 위생에 관한 사무
8. 폐기물 처리, 재활용 및 음식물처리에 관한 사무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목 “(도시경제국에 두는 과)”를 “(도시건설국에 두는 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1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경제교통과”를 “교통행정과”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6조) 제2항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제3호부터 제8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로 한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쇠부리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⑧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울산광역시 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⑫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⑮ 울산광역시 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⑯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⑰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 ⑨ 울산광역시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 ⑩ 울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 ⑪ 울산광역시 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같은 조 제6호 중 “경제협력업무”를 “경제진흥업무”로 한다.
- ⑫ 울산광역시 북구 노사정구민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업무부담 경감 및 조직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성격이 다른 업무를 분리하여 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제3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제5조, 제6조,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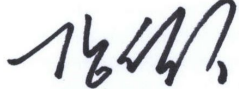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다. 과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라. 과 신설 : 교통행정과(제6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4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84명”을 “50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471명”을 “487명”으로 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2% 이내	7.5% 이내	21.5% 이내	30.5% 이내	31.3% 이내	8%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기능직공무원

구 분	6급	7급	8급	9급	10급
비 율	7% 이내	15% 이내	26% 이내	34% 이내	18%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	50% 이내	25% 이내	25% 이상	-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b>500</b>		-		
정무직계	<b>1</b>		-		
구청장	<b>1</b>	1	-	-	-
일반직계	<b>433</b>		-		
3급	<b>1</b>	1	-	-	-
4급	<b>4</b>	3	-	1	-
5급	<b>30</b>	<b>18</b>	2	2	8
6급 이하 계	<b>398</b>		-		
별정직계	<b>4</b>		-		
6급 상당 이하 계	<b>4</b>		-		
기능직계	<b>62</b>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10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라 우리 구 증원가능 규모인 16명에 대하여 시설물 건립(중산문화센터, 염포·양정도서관) 및 국정 주요 시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 부분에 대하여 정원을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제2조) : 484명 → 5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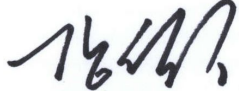
나.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 기준 조정(별표 2)

- 8급 : 29.5% 이내 ⇒ 31.3% 이내
- 9급 : 9.8% 이상 ⇒ 8% 이상

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별표 3)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6급 이하 계 : 383명 ⇒ 398명(증 15명)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  
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5호

##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0명”을 “2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1호를 제12호  
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2호(중  
전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지역 재향군인회장
12.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  
장이 위촉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과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2009.11.22)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방위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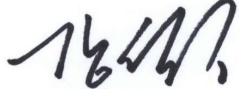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 2. 주요내용

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 구성 인원 1명 증원(20명 이내→21명 이내), 지역 재향군인회장 신설
-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를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개정(제2조)

나. “지역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할 수 있다”는 문구 삽입(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6호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3조제1항 중 “시가표준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한다.

제2장에 제3절(제35조부터 37조까지) 및 제4절(제38조부터 제40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35조(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

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감면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37조(신고의무)** ①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시세 조례」 제2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5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9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40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7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1절(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을 삭제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507호(2009. 4. 20)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09년 12월 31일” 을 “2010년 12월 31일”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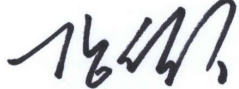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 1. 1 공포·시행)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어,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현행조례를 정비하여 사무처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구세는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함.(제3조)
- 나. “시가표준액”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가액”으로 함.(제23조)
- 다.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함.(제36조)
- 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 5로 함.(제39조)
- 마. “사업소세”를 삭제(제47조에서 제52조)
- 바.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시한이 2009.12.31자료 만료됨에 따라 현행 “1천분의8”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2010. 12. 31까지 연장 적용코자 함(제25조제1항 관련 부칙 조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7호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 제17조 중 “사업소세를”을 각각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 거  
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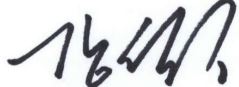
### 1. 개정이유

「지방세법」 개정(법률 제9924호, 2010.1.1 공포·시행)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업소세를” 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로 개정(제13조, 제16조, 제1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8호

##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의하여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여성·아동폭력”이라 함은 여성·아동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아동폭력의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여성·아동폭력 상담·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여성·아동폭력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3.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아동 폭력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여성·아동폭력방지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아동 폭력방지 및 상담, 보호, 치료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1명
2. 아동·여성폭력 관련 시설 및 기관의 책임자
3. 의료기관 관계직원
4. 해당지역 교육청·관할경찰서의 관계 공무원
5. 아동 또는 여성단체 대표자
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 방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매년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2. 여성·아동폭력 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4. 지역내 여성·아동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
6. 여성·아동의 안전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아동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여성 아동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태 통계자료 관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별·연령·학력·혼인상태·취업상태 등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여성·아동폭력의 발생요인, 발생유형, 폭력유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 교육

- 2. 인권교육
  - 3. 여성·아동폭력의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 4. 여성·아동폭력 관계법령
- ③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예방강사를 모집·등록·연계할 수 있다.

**제13조(여성·아동폭력방지 캠페인)**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비치 및 제공)** ①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지원을 위하여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과 안내자료 리스트를 경찰, 소방서, 의료기관, 학교, 동 주민센터, 복지관, 사업장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여성·아동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수당 등 지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을 할때 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복지법」 제4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하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 【제3조】

나. 지역연대의 설치·구성·기능 【제5조, 제6조, 제7조】

다. 위원장의 직무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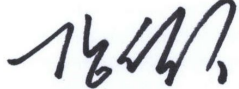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라. 여성·아동폭력실태 통계자료 관리 【제11조】

마. 자료의 비치 및 제공 【제14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 【제1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49호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육성, 발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과 보조금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사료의 수집·보존·보급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
7. 지역환경 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의 계발 및 진흥, 발전 등에 관련된 연구·조사와 문화행사 개최를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보조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줄 수 있다.

**제7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등)** 문화원장은 보조사업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각종 예산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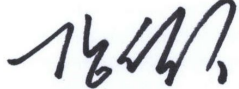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 1. 제정이유

구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하고, 지역 고유문화 계발·보존·전승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지원 대상(제3조)
- 나. 연구·조사·문화행사 등의 위탁(제4조)
- 다. 보조금 신청(제5조)
- 라. 경비 보조 등(제6조)
- 마. 보조사업 실적보고 등(제7조)
- 바. 지도·감독(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0호

## 울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차별과 장애 없이 쉽게 도서관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라 함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이용자 중심의 독서 기반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라 함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 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 및 평생학습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등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희시설이 있을 경우 주민접근이 다소 어렵더라도 위치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내에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설비 조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
3. 시설은 33평방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제6조(지자체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게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단계별로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립을 위한 공간, 설비, 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료 공동이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수립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작은 도서관에도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작은도서관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두며,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기획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하거나 조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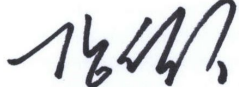
### 1. 제정이유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 속에서 가까운 거리의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보다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정의 【제2조】
- 나. 기능 【제3조】
- 다. 공간 및 위치 【제4조】
- 라. 설비 조건 【제5조】
- 마. 지자체의 책무 【제6조】
- 바. 운영 【제7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1호

##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이 조례는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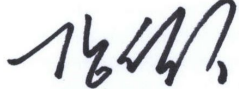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관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 조례상에는 적용범위에 있어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는 제외됨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국민임대 아파트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생활형편이 어려운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단서 개정

- 분양전환되지 않은 임대아파트 제외규정을 삭제하고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만 지원대상에서 제외(제2조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55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2. “출산장려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에 대한 지원
2. 임신부에 대한 지원
3. 철분제 지원
4. 영유아 예방접종

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지원금 등 각종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철분제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중 임신20주부터 출산 전까지로 한다. 다만, 임신성 빈혈이 확인된 임산부는 의사의 처방 등에 따라 조기 지원 가능하다.

③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준하여 시행한다

**제5조(세부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기준 및 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구청장은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시책에 대하여 홍보 등을 통해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금액은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시책에 참여한 사업체와 기관 등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유공자
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라 새로이 지원되는 사항은 조례 시행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하여 지원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지원내용(제3조)

나. 지원대상의 범위(제4조)

다. 세부지원계획 수립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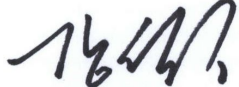
라. 홍보(제6조)

마. 환수 조치(제7조)

바. 출산장려시책 참여사업체 등 지원(제8조)

사. 포상(제9조)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330호

##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총무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총무과장·회계정보과장·문화홍보과장·평생교육과장·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절의 제목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생활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생활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절의 제목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별표 중 총무과, 평생교육과, 경제진흥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중 교통행정과 분장사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③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생활지원과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

⑤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의 “도시경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⑥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로 한다.

⑦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및 제3항 및 제4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47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및 제4항, 제49조, 제68조제2항, 제69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70조제4항, 제93조 중 “지방세과장”을 각각 “세무과장”으로 한다.

- ⑧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
- ⑨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 ⑩ 울산광역시 북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구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li> <li>4. 직원복무 및 청사 경비에 관한 사항</li> <li>5. 직장민방위 및 자체 예비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li> <li>7. 행정동우회(퇴직공무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 &lt;개정 08·12·24&gt;</li> <li>8. 국내·외 회의(대회)유치에 관한 사항</li> <li>9.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체결에 관한 사항</li> <li>10. 국내·외 사절단 파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11.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li> <li>12. 사무인계인수사항 확인에 관한 사항</li> <li>13. 기록물보존관리에 관한 사항</li> <li>14.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li> <li>15. 행정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6. 취미 동호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7. 공무원 건강진단 및 의료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li> <li>18. 상근인력 채용(단순 노무원 및 도로보수원의 배치전환, 청원경찰의 채용·현원관리)에 관한 사항</li> <li>19.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li> <li>20. 소속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21. 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li> <li>22. 공무원증 발급, 재직, 경력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li> <li>23. 신원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li> <li>24.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평정, 훈련성적 평정, 가점평정에 관한 사항</li> <li>25. 공무원 교육임용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i> <li>26.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7. 공무원 비밀취급 인가에 관한 사항</li> <li>28. 공무원 소양고사 실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li> <li>29. 공무원 연금 및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li> <li>30.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li> <li>31.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li> <li>32.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3.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li> <li>34.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li> <li>35.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6. 각종여론 및 동향관리</li> <li>37. 구청장 동 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li> <li>38.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li> <li>39.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li> <li>40.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에 관한 사항</li> <li>41.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li> <li>42.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li> </ol>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43.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li> <li>44. 기관단체 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45. 주민조례제정·개폐에 관한 사항</li> <li>46.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li> <li>48.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li> <li>49.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li> <li>50. &lt;삭 제&gt;</li> <li>51. 공무원단체(노조) 지원에 관한 사항</li> <li>52. 비정규직 노조에 관한 사항(환경미화원 제외)</li> <li>53. 노조관련 교육·연수·홍보계획 수립</li> <li>5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li> <li>55. 직원 상조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6. 상근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7. 일시사역인부채용 통제(예산편성, 사역기간 등) 및 통계작성에 관한 사항</li> <li>58. 직장협의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59. 총무국 타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평생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li> <li>2. 평생학습 정책연구와 주민욕구 조사</li> <li>3. 국내외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li> <li>4. 평생학습 홈페이지 구축과 각종시책 운영</li> <li>5.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관리</li> <li>6.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 시책 추진</li> <li>7.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특화사업 개발 운영</li> <li>8. 연도별 사업 평가(성과집, 영상물 제작과 시상 격려 등)</li> <li>9. 평생학습 축제운영과 참가</li> <li>10.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li> <li>11. 평생학습 주민교육(교양, 전문교육) 사업 추진</li> <li>12. 평생학습센터 관리와 운영지원</li> <li>13. 평생학습 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 관리 운영</li> <li>14. 평생학습 강사 은행제 운영</li> <li>15. 그 밖에 평생학습프로그램(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등)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6. 도서관 지도감독과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7. 도서관 신축에 관한 사항</li> <li>18. 문고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li> <li>19. 공공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0. 도서관과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li> <li>21. 독서 관련 주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li> <li>22. 교육행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ul>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제진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li> <li>3. 지역물가 종합대책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li> <li>4. 방문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li> <li>5. 통신판매업자 신고에 관한 사항</li> <li>6. 지역특화산업(향토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li> <li>7. 주민 지역경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8. 달천농공단지 지원에 관한 사항</li> <li>9. 부정경쟁 방지업무 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li> <li>10. 개인서비스업 품목가격조사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li> <li>11. 재래시장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2. 시장개설 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li> <li>13. 대규모 점포에 관한 사항</li> <li>14. 특허업무(적무발명관련 특허신청 및 결정 포함)에 관한 사항</li> <li>15. 가격표시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16. 공산품 원산지표시관련 지도에 관한 사항</li> <li>17. 유통산업 근대화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8. 불량, 불법 공산품 추방운동에 관한 사항</li> <li>19.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li> <li>20.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lt;개정 08-12-24&gt;</li> <li>21.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공장유치에 관한 사항</li> <li>22. 에너지융합리화법에 관한 사항</li> <li>2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임에 관한 사항</li> <li>24. 석유판매업 등록·신고에 관한 사항</li> <li>2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에 관한 사항</li> <li>2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li> <li>27. 연료수급 및 조정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li> <li>28. 계량기에 관한 사항</li> <li>29.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항</li> <li>30. 기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li> <li>31. 공장등록에 관한 사항</li> <li>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li> <li>33.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의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li> <li>34. 당해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li> <li>35. 가스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36. 고압가스(판매, 저장, 제조업)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li> <li>37. 액화석유가스(판매, 저장소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li> <li>38.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항</li> <li>39.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신고·승인에 관한 사항</li> <li>40.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li> <li>41. 도시가스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li> <li>4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임에 관한 사항</li> <li>43. 안전관리자 선 해임 신고에 관한 사항</li> <li>44.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 방지조치, 명령에 관한 사항</li> <li>45.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영업소 설치에 관한 사항</li> <li>46.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임에 관한 사항</li> <li>47. 에너지융합리화법에 관한 사항</li> <li>48. 담배 도·소매인 지정 및 폐업에 관한 사항</li> <li>49. 노·사·정 협의회에 관한 사항</li> <li>50. 노동행정의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li> <li>51. 노동단체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li> </ol>

부 서 명	분 장 사 무
<b>교통행정과</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통기획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교통관련 소규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및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li> <li>4. 주정차 과태료 체납자의 압류등록 및 압류말소에 관한 사항</li> <li>5. 견인대행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 및 노상·노외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민영주차장 설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li> <li>7. 공영주차장 설치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li> <li>9.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관한 사항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li> <li>10. 도시계획시설 중 주차장의 매수청구에 대한 매수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li> <li>11. 부설주차장(기계식장치)설치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lt;개정 08·12·24&gt;</li> <li>1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li> <li>14.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 및 교통량 조사에 관한 사항</li> <li>15.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li> <li>1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li> <li>17.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 압류 및 등록에 관한 사항</li> <li>18. 자동차 점검 및 정비명령 등(사업용자동차 지도점검 제외)에 관한 사항</li> <li>19.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고발, 정비명령)에 관한 사항</li> <li>20. 법령위반 차량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항</li> <li>21. 자동차 검사명령에 관한 사항 및 이륜 자동차의 사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li> <li>22. 이륜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3. 자동차 책임보험 등에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증명 서류의 제출명령에 관한 사항</li> <li>24.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 등 책임보험에 관한 사항</li> <li>25.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다만 법제22조 및 제33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li> <li>26.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관한 사항</li> <li>27.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li> <li>28. 자동차의 검사, 자동차의 점검에 관한 사항</li> <li>29.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li> </ol>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국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국과 업무가 상이한 과에 대하여 소속 국을 조정, 경제교통과를 분리하여 교통행정과를 신설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사무분장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국 명칭 변경(제5조, 제6조)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제4조, 제5조, 제6조)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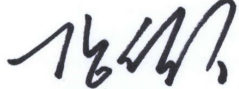
다. 과 명칭 변경(제4조, 제5조)

- 지방세과 → 세무과
- 경제교통과 → 경제진흥과

라. 과 신설 : 교통행정과(제6조)

마. 사무분장 조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31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계	합계		500	378	13	36	73
	정무직		1	1			
	일반직		433	330	8	31	64
	기능직		62	45	5	3	9
	별정직		4	2		2	
정무직	구청장		1	1			
일반 반 직	계		433	330	8	31	6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0	18	2	2	8
		행정	20	11	2		7
		의무	1			1	
		시설	3	3			
		행정·시설·녹지	1	1			
		행정·시설	1	1			
		행정·보건·환경	1	1			
		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시설·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6급	소계	87	72	2	5	8
		행정	49	38	2	1	8
		세무	1	1			
		사회복지	1	1			
		전산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9	9			
		통신	1	1			
행정·시설		3	3				
행정·세무		4	4				
행정·환경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녹지		1	1				
행정·사서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간호·의료기술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일 반 직	7급	소 계	125	99	2	10	14
		행정	61	46	2	1	12
		세무	7	7			
		사회복지	7	6			1
		전산	2	2			
		농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6			
		공업	1	1			
		통신	1	1			
		행정·세무	3	3			
		공업·환경	1	1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보건·간호	1				1
		보건·약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	2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8급	소 계	133	100	1	12	20
		행정	53	38	1		14
		세무	9	9			
		사회복지	7	2			5
		전산	3	3			
		농업	2	2			
		녹지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보건	5	2		3	
		의료기술	5			5	
간호		3			3		
환경		2	2				
시설		20	20				
통신	3	3					
공업	2	2					
사서	1	1					
행정·세무	2	2					
행정·보건	1	1					
행정·사서	3	3					
행정·환경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시설	2	2					
행정·사회복지	1	1					
공업·환경	1	1					
보건·의료기술	1			1			



직종별	직급별	직 렬 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 계	53	37	1	1	14
		행 정	25	14	1		10
		세 무	2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3	1			2
		녹 지	1	1			
		환 경	2	2			
		시 설	7	7			
		공 업	2	1		1	
		통 신	2	2			
		사 서	4	4			
		행정·사회복지	2				2
		공업·통신	2	2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사항 반영 및 상반기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직급·직렬별 정원조정(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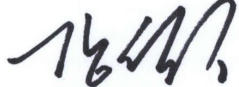
#### 1) 정원조정

- **5급 : 29명 → 30명(증 1명)**
  - 행정 : 19명 → 20명(증 1명)
- **6급 : 84명 → 87명(증 3명)**
  - 행정 : 47명 → 49명(증 2명)
  - 행정·시설 : 2명 → 3명(증 1명)
- **7급 : 124명 → 125명(증 1명)**
  - 행정 : 61명 → 62명(증 1명)
- **8급 : 126명 → 133명(증 7명)**
  - 행정 : 50명 → 54명(증 4명)
  - 사회복지 : 6명 → 7명(증 1명)
  - 행정·시설 : 1명 → 2명(증 1명)
  - 행정·사서 : 2명 → 3명(증 1명)
- **9급 : 49명 → 53명(증 4명)**
  - 행정 : 22명 → 25명(증 3명)
  - 사 서 : 3명 → 4명(증 1명)

#### 2) 직렬변경(단수 → 복수)

- **7급 : 125명 → 125명(총수 변동없음)**
  - 행정 : 62명 → 61명(△1명)
  - 세 무 : 8명 → 7명(△1명)
  - 행정·세무 : 1명 → 3명(증 2명)
- **8급 : 133명 → 133명(총수 변동없음)**
  - 행정 : 54명 → 53명(△1명)
  - 세 무 : 10명 → 9명(△1명)
  - 행정·세무 : 0명 → 2명(증 2명)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332호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경제교통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

별표 1 중 총무국의 총무과 세부결재 한계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중 총무국의 환경위생과 세부결재 한계를 삭제하고, 문화홍보과 및 평생교육과 세부결재한계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생활지원국”을 “생활경제국”으로 변경하고, 문화홍보과 및 평생교육과 세부결재 한계를 각각 삭제하고, 경제진흥과 및 환경위생과 세부결재 한계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중 “도시경제국”을 “도시건설국”으로 변경하고, 교통행정과 세부결재 한계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세부결재 한계(제4조제1항 관련)

□ 총무국

○ 총무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과장	국 장	부 구청 '장	
		실무자	담당				
1.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가. 국 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기안			○		
2. 보안업무	가. 보안업무 세부시행 계획	기안			○		
	나. 비밀문서 발간	기안			○		
	다. 보안업무 심사분석	기안			○		
	라. 보안통제 및 교육	기안		○			
3. 의전·의식행사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행사추진		기안		○		
4. 공인관리	가. 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	기안			○		
	나. 인영의 인쇄사용신청	기안		○			
5. 복무	가. 공무원 복무 지도단속		기안	○			
	나. 청사경비, 청원경찰 복무관리	기안		○			
	다. 당직명령	기안		○			
	라. 6급 이상 공무원 국외출장허가	기안					○
	마. 7급 이하 공무원 국외출장허가	기안				○	
	바. 전 직원 비상소집		기안				○
	사. 필수요원 및 직원1/2 비상소집		기안			○	
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발간실 운영	기안		○			
	나. 기록물(문서 등) 관리	기안			○		
	다. 자료관 설치·운영						
	(1) 자료관설치 및 방침 결정사항	기안					○
	(2) 자료관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 정보공개사무 총괄 조정	기안			○		
(2)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기안		○				
7. 후생복지	가. 직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직원취미클럽, 직장 상조회 운영	기안		○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가.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	기안		○			
	나. 방위협의회 운영	기안					○
	다. 전시 정부기관 소산 및 이동에 관한 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9. 국제교류	가. 외국국민, 외교관, 단체장 영접		기안				○
	나. 외국 부 단체장급 이하 영접		기안			○	
	다. 국제교류 계획 및 방침결정		기안				○
	라. 국제교류 세부시행계획 및 추진		기안			○	
10. 인사방침	가. 인사방침		기안				○
11. 공무원 임용 및 전보	가.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기안				○
	나.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기안				○	
	다. 기능직 및 가,나항 외 기타공무원	기안			○		
	라. 공무원 전출입 동의요구						
	(1) 6급 이상 공무원	기안					○
	(2) 7급 이하 공무원	기안				○	
	마. 임용장 및 발령통지서 교부						
	(1) 6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및 별정직 공무원	기안					○
	(2) 7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기안				○	
	(3) 기능직 및 가, 나항외 기타공무원	기안			○		
	바. <삭제 06-3-13>						
	사. 특별채용 및 전직						
	(1) 일반·별정·계약직 공무원		기안				○
	(2) 기능직 공무원		기안			○	
	아. 임용후보자 등록 및 명부작성	기안		○			
	자. 퇴직(명예·정년퇴임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차. 공무원 임용유예 승인사항	기안			○		
카. 정원의 상근인력(청원경찰)관리							
(1) 채용	기안					○	
(2) 해제	기안		○				
12. 평정	가. 평정(경력,근무성적),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						
	(1) 정기조정		기안				○
	(2) 수시조정	기안				○	
13. 대우공무원선발	가. 대우공무원 선발	기안				○	
14. 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조정	가. 공무원 정기승급 및 호봉 재조정	기안			○		
15. 공무원 교육훈련	가. 5급 이상 공무원	기안					○
	나. 6급 공무원	기안			○		
	다. 7급 이하 공무원	기안		○			
	라. 공무원 각종시험요구 및 시험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살 과장	국 장		부 구청장
		실무자	담당				
	마. 각종 자격·면허시험		기안		○		
	바. 소양고사 기본계획	기안				○	
	사. 소양고사결과 사후관리	기안			○		
	아. 공무원 직장보수교육	기안			○		
16. 인사기록관리	가. 인사기록관리 및 인사통계	기안		○			
	나. 공무원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기안			○		
	다. 공무원증 및 각종 제증명 발급	기안	○				
	라. 공무원 신원조회	기안	○				
	마. 공무원 전력조회	기안	○				
17. 공무원 보수	가. 공무원(정원의 인력포함) 보수지급	기안		○			
	나. 공무원 요양신청 및 승인	기안		○			
	다. 연금 및 공제회비등 지급여지급신청	기안		○			
	라. 의료보험피보험자 신고	○					
18. 공무원 표창	가. 표창기본 방침	기안				○	
	나. 장관이상 표창 추천	기안				○	
	다. 구청장, 시장 및 각급기관장 표창 추천	기안				○	
19. 고충처리	가. 인사, 고충심사, 공직심사위원회 운영	기안				○	
20.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승인	가. 장기재직휴가 신청 및 승인	기안			○		
21. 구청장 동방문 및 간담회개최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동방문 및 간담회 건의사항 처리		기안			○	
	다. 지시사항 통보·관리	기안		○			
2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	가. 중요사안		기안			○	
	나. 경미사안	기안		○			
23.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가. 행정서비스현장 제·개정	기안				○	
	나. 행정서비스현장 운영 일반	기안		○			
24. 고객감동운영	가. 실천계획 수립	기안				○	
	나. 친절공무원 표창	기안				○	
	다. 친절도 확인 점검	기안			○		
	라. 친절도 설문조사	기안			○		
25. 각종 여론 및 동향관리	가. 집단민원 진정 및 반발 여론		기안			○	
	나. 공익에 관한 주요사항	기안				○	
	다. 주요행사 사항 여론	기안				○	
	라. 일반행정 동향 및 주간동향보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과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26. 국민운동단체 운영	가. 국민운동교육 입소	기안			○		
	나. 새마을지회 보조금 지급	기안			○		
	다. 새마을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라. 바르게 살기 보조금 지급	기안			○		
	마. 바르게 살기 관련 업무 일반	기안		○			
	바. 국민운동 단체 행사 일반	기안			○		
	사. 보조사업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아.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기안			○		
27. 신지식인 관리	가. 신지식인 선정	기안					○
	나. 신지식인 관리	기안		○			
28. 자율방범대 운영	가.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	기안			○		
	나. 자율방범대 운영일반	기안		○			
29. 새마을금고관리	가. 새마을금고 합병 및 분할	기안				○	
	나.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기안		○			
30. 시책추진	가. 시책개발 계획 수립		기안				○
	나. 시책사업 기획 및 운영	기안			○		
31. 행정사관련업무	가. 행정사 관련업무	기안		○			
32. 행락질서 확립	가. 행락질서 확립	기안			○		
33. 민주화운동관 련자 사실조사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기안			○		
34. 선거 및 국민· 주민 투표사무	가. 선거(투표)사무추진 종합계획	기안					○
	나. 선거(투표)인명부 작성공무원 입면 사항 통보	기안		○			
	다. 선거(투표)인(부재자)명부에 날인할 인장인영 신고	기안		○			
	라. 선거(투표)관련 업무지도 및 교육	기안		○			
	마. 선거(투표)인명부 작성 상황 통보	기안				○	
	바. 선거(투표)인명부 확정 상황 통보	기안				○	
	사. 부재자 신고(투표)인 명부확정 상황 통보	기안			○		
	아. 선거(투표)인명부 사본 작성 비용 공시	기안		○			
	자.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기안	○				
	차. 인구수 등의 통보	기안		○			
	카.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협조(인력)	기안				○	
	타. 선거관리위원회 지원·협조(기타)	기안		○			
	하. 기타 선거(투표)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기안		○			
	거. 주민투표청구에 관한 사항						
	(1) 주민투표청구서 접수	기안					○
	(2) 주민투표청구심의회구성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과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3) 주민투표청구심의회운영	기안				○	
	(4)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 권위임신고증 교부	기안				○	
	(5)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서명요청 위임 신고증 교부사실 공표(의뢰)	기안		○			
	(6)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7) 투표청구 주민수 공표	기안			○		
	(8) 기타 일반적인 사항	기안		○			
35. 주민조례 제정, 개폐청구 및 주민소환 투표청구제 운영	가. 주민청구를 위한 연서하여야 할 주민 수 공표	기안					○
	나. 주민소환 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서명인수 공표						○
	다. 조례제정개폐청구접수	기안					○
	라. 조례제정개폐청구 대표자증명 및 취지공표	기안				○	
	마. 청구인명부서명요청권 위임신고 접수 및 신고증 교부	기안			○		
	바.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일반적인 사항	기안			○		
36. 연휴종합대책 추진	가. 연휴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연휴종합대책 시행	기안		○			
37. 국가기반체계 보호	가.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기안			○		
	나. 기반체계보호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기안			○		
	다. 안전관리위원회·지역안전대책본부 운영	기안				○	
	라. 인력·장비·물자등의 동원명령	기안			○		
	마. 기반체계관련 여론동향 등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기안			○		
38. 공무원단체지원	가. 공무원노조 규정등의 시정·보완요구	기안		○			
	나. 공무원노조회의등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공무원노조법 제정·시행에 따른 조례·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공무원노조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1) 기본방침(계획)수립		기안				○
	(2) 교육연수 프로그램 계획수립 및 시행	기안			○		
	마.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2) 단체교섭	기안			○		
	(3) 단체협약체결		기안				○
39. 비정규직 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	가. 비정규직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1)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2) 단체교섭	기안			○		
	(3) 단체협약 체결		기안				○
	다. 정원의 상근인력(환경미화원 제외) 예산 편성 지침수립	기안			○		
	라. 정원의 상근인력(환경미화원 제외) 예산편성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과장	국 장	부 구청장	
		실무자	담당				
40. 동행정 종합 조정	가. 동업무 지원 및 지도점검	기안			○		
	나. 동기능전환 관련 업무	기안			○		
	다. 동행정관련 문서 및 회의 통제	기안		○			
	라. 동담당 실과 지정 및 조정	기안				○	
	마. 역점시책 종합평가 및 시상	기안					○
41. 행정구역조정 및 통반 운영	가. 자치단체간 행정구역조정 및 명칭변경		기안				○
	나. 동간 행정구역 조정 및 명칭변경	기안					○
	다. 통·반 조정 운영	기안			○		
	라. 통·반장 표창	기안					○
	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1) 대상자 선정	기안				○	
(2) 장학금 지급	기안				○		
42. 동예산 운영	가. 예산편성	기안			○		
	나. 예산배정 및 교부	기안		○			
43. 주민자치센터운영	가. 자치센터 설치관련 사항	기안			○		
	나. 프로그램 운영 및 변경	기안		○			
44. 주민등록 관리	가. 주민등록 일반사무	기안		○			
	나. 주민등록 전산사무	기안		○			
	다. 주민등록 인구이동 보고	기안		○			
	라. 주민등록 일체정리 추진	기안			○		
	마. 주민등록증 수불 및 회수 파기	기안		○			
45. 인감증명 사무	가. 인감증명 사무	기안		○			
46. 주민만남의 날 행사 운영	가. 주민만남의날 행사(반상회)운영 계획 수립	기안			○		
	나. 주민만남의날 행사 주민홍보 사항	기안		○			
	다. 주민 건의사항 통보 및 관리	기안		○			
47.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운영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경미한 사항	기안		○			
48. 민방위대 조직	가. 민방위대 정기검열	기안		○			
	나. 시범민방위대 지정운영			○			
	다. 민방위대 조직편성 및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			○			
	라. 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			
마. 지역·직장 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지도 감독	기안		○				
49. 민방위 사태시 조치	가. 민방위 사태하의 주민소산 및 수송통제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차 결 재	
		담 당 자		실 과 장	국 장		부 처 장
		실무자	담당				
	나. 등화관제 및 음향 관제에 관한 훈련	기안			○		
	다. 민방위사태시 총괄조정 및 조치		기안			○	
	라. 민방위 경보 발령		기안			○	
	마. 등화관제 결정 및 조치	기안				○	
	바. 민방위 사태시 응급조치 명령	기안				○	
	사. 민방위대 동원	기안				○	
50. 비상대비 업무	가. 총무계획 수립 및 집행		기안			○	
	나. 유관기관 총무계획 공람	기안			○		
	다. 분야별 총무계획 조정통제	기안			○		
	라. 중점관리 자원의 날 행사	기안		○			
	마. 중점관리업체 및 인력동원 자원관리	기안		○			
	바. 을지연습 계획 수립 시행	기안				○	
	사. 을지연습 근무명령	기안			○		
51. 각종 전시훈련에 관한 사항	가. 각종 전시훈련에 관한 사항		기안			○	
52. 국가동원전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가. 국가동원 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조정통제		기안			○	
53. 군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가. 군관계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54. 주민신고망 조직운영관리	가. 주민신고 요원 위촉	기안		○			
	나. 유관기관, 각급 학교 협조체제 유지	기안		○			
	다. 주민신고 체계반 정비	기안		○			
55. 공익근무요원 관리	가. 배정요청	기안			○		
	나. 근무지 지정 및 배치전 교육	기안		○			
	다. 복무분야 변경	기안		○			
	라. 신분증명서 발급	기안	○				
	마. 신상이동 및 소집해제 통보	기안		○			
	바. 복무관리 및 지도	기안		○			
	사. 복무이탈, 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자 고발	기안		○			
	아. 공익근무요원 보수지급	기안		○			
	자. 공익근무요원 단체상해보험관리	기안		○			
	차. 기타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56. 민방위 시설·장비	가. 민방위시설 설치 계획	기안			○		
	나. 민방위시설 용도 폐지	기안			○		
	다. 민방위장비 및 물자수급 계획	기안		○			
	라. 주요민방위 시설 방호계획 수립	기안			○		
	마. 민방위시설·장비 유지 보수	기안		○			
57. 민방위 교육·훈련	가.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 수립	기안			○		
	나. 민방위 교육·훈련 결과 보고	기안		○			
	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위·해촉	기안		○			
	라. 민방위교육 보조재료 연구 및 구입결정	기안		○			
	마.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	기안			○		
	바. 민방위 안내·유도	기안		○			
	사. 직장민방위 대원 교육·훈련 통지 및 불참자 처리	기안		○			
	아. 민방위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시책홍보	가. 홍보행정의 종합계획의 수립						
	(1) 홍보계획 수립		기안			○	
	(2) 홍보요원 교육	기안		○			
	(3) 구정시책여론 분석	기안		○			
	나. 구정 홍보시설물(게시판, 전광판, 홍보관) 관리	기안		○			
2. 구정홍보물	가. 구정 홍보물 발간계획 수립	기안				○	
	나. 각종 홍보물 배부	기안		○			
3. 언론·여론	가. 언론·여론 및 공보자료 취재 분석	기안		○			
	나. 구정관련 신문, 방송, TV방영	기안		○			
4. 공고·공보발행	가. 게시·공고·공보발행	기안		○			
5. 행정간행물	가. 행정간행물의 배부관리 (국정홍보자료 등)	기안		○			
6. 사이버기자에 관한 사항	가. 사이버기자 신고·접수	기안		○			
7. 구 문화예술진흥업무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문화예술진흥 사업추진	기안		○			
	다. 문예진흥기금 조성	기안			○		
	라. 문예진흥기금 운영	기안		○			
	마. 지역문화 예술단체 육성	기안		○			
	바. 지역문화 예술단체 지도	기안		○			
8.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사항	가. 등록수리 및 취소	기안		○			
	나. 출판사 및 인쇄소 지도·감독	기안		○			
	다. 불법간행물 단속	기안		○			
9. 문화의 집	가. 문화의 집에 관한 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0. 문화기반시설관리	가. 문화기반시설 설치계획	기안					○
	나. 문화기반시설 육성지원	기안				○	
	다. 문화기반시설 지도·감독	기안		○			
11. 각종문화예술 행사개최 및 지원	가. 행사 개최 및 지원계획	기안					○
	나. 행사 세부추진 사항	기안		○			
12. 전통사찰보존에 관한 사무	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사무	기안		○			
13. 문화재 및 유적지 보존관리	가. 문화재 및 유적지 보존관리	기안		○			
14. 종교업무에 관한사항	가. 종교업무에 관한 사항	기안		○			
15. 전통민속발굴 보존	가. 전통 민속발굴 보존		기안	○			
16. 관광자원조사통계	가. 관광자원 조사·통계	기안		○			
17. 관광개발 및 편의시설설치	가. 개발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기안				○	
	나. 관광편의시설 관리·운영	기안		○			
18. 관광홍보 및 안내	가. 관광 홍보 및 안내	기안		○			
19. 관광 저해사범 단속 및 관광 불편신고처리	가. 관광저해사범 단속 및 관광불편 신고처리	기안		○			
20. 관광지내 토석채취, 임목벌채 등의 허가	가. 관광지내 토석채취, 임목벌채 등의 허가	기안				○	
21. 관광사업 등록에 관한 사항	가. 관광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관광사업 지도·감독	기안		○			
22. 공연장설치에 관한 사항	가. 공연장업 등록 수리 및 취소	기안		○			
	나. 공연장 지도·단속	기안		○			
23.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사항	가. 영화상영 신고	기안		○			
	나.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	기안		○			
24. 해수욕장관리 운영	가. 해수욕장 지정·관리운영	기안					○
25. 구지·구사항토사 편집	가. 편찬계획 수립		기안				○
	나. 편찬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다. 편찬위원회 운영		기안		○		
	라. 집필위원 선정		기안	○			
	마. 편찬자료 선정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살.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6.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 계획수립	가. 건전생활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27. 건전생활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가. 건전생활관련 단체육성 및 지도	기안		○			
28. 체육시설의 관리	가. 공공체육시설 설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 체육시설 관리	기안		○			
	다. 등록 체육시설 사업계획 의견 제출	기안		○			
29. 체육단체지도·감독	가.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대규모 체육행사	기안			○		
	다. 지도감독 일반	기안		○			
30.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가. 신고·변경신고 수리	기안		○			
	나. 신고필증 재교부	기안	○				
	다. 영업폐쇄 및 영업정지명령	기안		○			
	라. 청문 및 행정처분	기안		○			
31. 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가. 직장 체육활동의 지원	기안		○			
	나. 사격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기안		○			
32. 지역 생활체육진흥사업 전개	가. 지역 생활체육 진흥사업전개	기안		○			
33. 체육공원 조성 및 관리	가. 체육공원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체육공원 조성과 관리	기안		○			
34. 동네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동네체육시설 설치	기안			○		
	나. 동네체육시설 관리	기안		○			
35.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관리	기안		○			
	라.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마.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기안		○			
	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6.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선도·보호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 청소년보호법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37.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위문,결연)	기안			○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38.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련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기안				○	
	다.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수련시설 운영 지도·단속	기안		○			
	마. 수련시설 허가취소·정지명령·청문	기안				○	
	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수련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통지	기안		○			
39. 청소년의 달 행사	가.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40.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보호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 (위문, 결연)	기안		○			
41.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가.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42. 청소년 진로 지도 및 상담	가.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43. 비행청소년 보호	가. 위문 및 격려	기안		○			
	나. 교육 및 수련	기안		○			
44. 청소년공부방 운영	가.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45.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가.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기안		○			
46. 문화예술회관 관리	가. 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회관 시설물 및 공연장 유지관리	기안		○			
	다. 홈페이지 자료 관리	기안	○				
47. 문화예술회관공연 전시 기획	가. 기획공연, 전시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연·전시 유치	기안			○		
	다. 입장권 발급, 매표 정산	기안		○			
48. 문화예술회관 대관	가. 대관허가 및 사용료 조정	기안		○			
	나. 입장권 검인 및 수표	○					
49. 문화예술회관 문화 강좌 운영	가. 문화강좌운영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강좌 수강 접수 및 처리	○					

○ 평생교육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평생교육 진흥기반 구축	가.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1) 평생교육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 수립	기안				○	
	(2) 평생교육진흥 실행계획 수립	기안			○		
	(3) 평생교육진흥사업 추진상황 보고	기안		○			
	(4) 평생교육진흥업무 성과보고 및 평가	기안				○	
	나. 평생교육협의회,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1)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기안				○	
	(2)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개최	기안			○		
	(3)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관리·운영	기안		○			
	다. 평생교육 기관·단체간 교류 협력						
	(1) 네트워크 계획 수립	기안				○	
	(2) 협력기관·단체간 공동사업 추진						
	(가) 중요한 사항	기안				○	
	(나) 일반적인 사항	기안		○			
	(3) 협력기관·단체간 교류에 관한 일반사항						
	라. 평생학습문화 활성화						
	(1) 평생학습세미나 등 개최						
	(가) 개최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기안			○	
	(나) 세미나 운영	기안		○			
	(다) 세미나 운영 결과보고	기안			○		
	(2) 평생교육 강사 및 실무자 연수						
	(가) 개최계획 및 운영방안 수립		기안		○		
	(나) 결과보고	기안			○		
	(3) 평생학습의 날 운영						
	(가) 평생학습의 날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평생학습의 날 관리·운영	기안		○			
	마. 평생학습 홈페이지 관리·운영						
	(1) 홈페이지 개편 및 신규 콘텐츠 구축	기안				○	
	(2) 홈페이지 자료관리	기안		○			
	(3)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2. 평생교육 센터 운영	가. 평생학습 정책연구사업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정책자료 수집 및 조사	기안			○		
	(3) 정책연구 결과보고	기안				○	
	나.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지원						
	(1) 학습동아리 육성계획 수립		기안			○	
	(2) 학습동아리 현황조사	기안		○			
	(3) 학습동아리 운영	기안		○			
	다. 평생학습 강사 은행제 운영						
	(1) 강사은행제 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기안			○		
(2) 지역강사 발굴 및 DB화	기안		○				
3. 제3대학 운영	가. 제3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						
	(1) 제3대학 운영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기안				○	
	(2) 학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제3대학 연간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나) 학기별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학기별 학과 운영에 관한 조정사항	기안		○			
	나. 학생모집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학생모집에 관한 사항						
	(가) 입학원서 접수 및 관리	기안	○				
	(나) 예비합격자 관리	기안		○			
	(2) 학생모집 변경에 관한 사항						
	(가) 학생모집 자격변경 등 중요사항	기안				○	
	(나) 학생모집 기간 변경 등	기안		○			
	(3) 학생등록에 관한 사항						
	(가) 수업료 징수 및 등록	기안		○			
	(나) 결격사유 등에 의한 등록취소	기안			○		
(다) 예비합격자 등록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 제3대학 운영	(4) 수업료 반환에 관한 사항						
	(가) 수강 포기원 접수 및 관리	기안		○			
	(나) 수업료 반환 처리	기안		○			
	다. 강사모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강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특강, 합동수업 강사 위촉(선정)	기안				○	
	(3) 학과별 강사 위촉(선정)	기안			○		
	(4) 동아리 강사계약 체결 및 운영	기안		○			
	라. 출석 등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						
	(1) 개인별 출석에 관한 사항 관리	기안	○				
	(2) 공가, 병가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 대체수업 인정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졸업 및 포상, 징계에 관한 사항						
	(1) 중요한 사항	기안				○	
	(2) 일반적인 사항	기안		○			
	바. 학습동아리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연간 운영계획	기안				○	
	(2) 학습자 요구조사 등	기안		○			
	사. 학생의 대내활동에 관한 사항						
	(1) 학생회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	기안			○		
	(2) 학생회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	기안		○			
	아. 학생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1) 학과별, 총학생회 주관사항	기안				○	
	(2) 동아리별 또는 10인 이상 주관사항	기안			○		
	(3) 10인 이하 또는 개인별 활동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 무 자	담 당				
4 주민자치대학 운영	가. 연도별 운영계획 수립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위탁운영업체 선정	기안				○	
	(3) 강사선정	기안			○		
	나. 수강생 모집관리						
	(1) 주민홍보	기안		○			
	(2) 수강신청서 접수 및 관리	○					
	(3) 수강생별 수강내역 관리	기안		○			
	다. 강좌 운영						
	(1) 연도별 개강 행사	기안				○	
	(2) 매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3) 수강등록생에 대한 메시지 송부	○					
	(4) 주민참여 안내 및 홍보	기안		○			
	(5) 출석체크용 프로그램 관리	기안		○			
	(6) 참석증 관리	○					
	(7) 매회 출석사항 등 운영결과 보고	기안		○			
	라. 수료 및 포상에 관한 사항						
	(1) 연도별 수료계획 수립	기안				○	
	(2) 포상(수료자, 개근자, 만학생, 장기수강자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수강생 만족도 조사						
	(1) 조사계획 수립	기안			○		
	(2) 설문조사서 분석 및 관리	기안		○			
	(3) 조사결과 보고	기안			○		
	바. 강의전 노래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강사선정						
	(가) 강사모집 및 신청서 접수	기안		○			
	(나) 강사선정	기안				○	
(다) 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5.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가. 사이버 외국어교실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위탁업체 선정	기안				○	
	(3) 월말 운영결과 보고	기안			○		
	(4) 이벤트 등 활성화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5) 교육이수자 통보	기안		○			
	나. 영어말하기 대회 운영						
	(1)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방안(위탁업체 선정)	기안				○	
	(3) 보조금 교부 및 정산	기안			○		
	(4) 대회운영 결과보고	기안				○	
(5) 운영일반	기안		○				
6. 성인문해 교육	가. 성인문해교육 지원						
	(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계획	기안				○	
	(2) 성인문해 교육기관 보조금 교부	기안			○		
	(3) 운영 프로그램 점검	기안		○			
	(4) 성인문해 교육기관 보조금 정산	기안			○		
	(5) 성인문해 교육기관 조사, 관리, 평가	기안		○			
	나. 학력보완 교육의 지원						
	(1) 학력보완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2) 학력보완 교육 운영 일반	기안		○			
	7. 기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 특성화 프로그램 계획 수립	기안				○
(2)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기안			○		
나. 일반 프로그램 운영							
(1)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수강생 모집-운영		기안		○			
(3) 수강신청서 관리		○					
(4) 프로그램 운영		기안		○			
(5) 만족도 조사 및 분석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8. 평생학습 축제 개최 및 참가	가. 평생학습축제 개최						
	(1) 개최계획 수립	기안				○	
	(2) 관계자 회의 개최	기안		○			
	(3) 축제운영	기안		○			
	(4) 축제평가	기안				○	
	나. 평생학습축제 참가						
	(1) 참가계획 수립	기안				○	
	(2) 운영	기안		○			
(3) 결과보고	기안				○		
9. 도서관 건립	가. 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		기안			○	
	나. 도서관 개관행사 계획		기안			○	
	다. 기타 도서관 건립에 관한 일반사항	기안		○			
10. 도서관 운영 및 관리	가. 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기안			○	
	나.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동도서관 운영 계획	기안			○		
	(2) 이동도서관 업무일지	기안		○			
	(3) 이동도서관 회원관리	기안	○				
	(4) 이동도서관 차량운행 및 관리	기안		○			
	다. 도서관 시설물 유지, 관리, 보수	기안		○			
	라. 부속시설 사용						
	(1) 부속시설(세미나실, 동아리실, 다목적실) 사용허가	기안		○			
	(가) 독서회 등 일반사항	기안	○				
	(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안		○			
	(2) 사물함 사용신청 및 관리	기안	○				
	마. 도서관 견학에 관한 사항	기안	○				
	바. 도서관 휴관에 관한 사항	기안			○		
	사. 기간제근로자 관리	기안		○			
아. 공익근무요원 관리	기안		○				
자. 보안점검부 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1. 도서관 자료구입 및 자료실 운영	가. 자료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자료관리						
	(1) 장서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기안			○		
	(2) 등록원부 관리	기안		○			
	(3) 기증자료 관리	기안		○			
	(4) 훼손·분실 도서의 배상	기안		○			
	(5) 반납독촉장 발송 관리	기안		○			
	다. 자료의 제적 등						
	(1) 자료 불용결정 심의조서	기안			○		
	(2) 불용자료 제적처리	기안		○			
	라. 회원관리						
	(1) 회원가입 신청서 접수 및 관리	기안	○				
	(2) 회원증 분실 재발급 신청	기안	○				
	(3) 회원증 발급	○					
	(4) 연체자 관리	○					
	마. 자료실 복사신청 관리	기안	○				
12. 교육문화 강좌 및 행사운영	가. 도서관 주간행사						
	(1) 도서관 주간 행사 계획	기안			○		
	(2) 도서관 주간 행사 운영	기안		○			
	(3) 도서관 주간 행사 결과보고	기안			○		
	나. 독서의 달 행사						
	(1) 독서의 달 행사 계획	기안			○		
	(2) 독서의 달 행사 운영	기안		○			
	(3) 독서의 달 행사 결과보고	기안			○		
	다. 북스타트데이 운영						
	(1) 북스타트데이 운영 계획	기안			○		
	(2) 북스타트데이 운영	기안		○			
	(3) 북스타트데이 운영 결과보고	기안			○		
	라.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1) 프로그램 운영 계획	기안		○			
	(2) 수강신청 및 출결 관리	○					
	(3)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3. 자원봉사자 운영	가. 자원봉사자 운영 기본계획	기안					○
	나. 자원봉사자 모집·운영						
	(1) 자원봉사자 모집 및 접수	기안	○				
	(2) 자원봉사자 보수 교육	기안		○			
	(3) 자원봉사자 관리대장 관리	기안	○				
	다. 사서도우미 과정 개설·운영	기안			○		
	라. 동아리 구성·운영						
	(1) 동아리 구성·운영 지원	기안		○			
(2) 자체 운영	기안	○					
14. 도서관 전산시스템 운영	가. 도서관리프로그램 및 서버운영						
	(1)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기안		○			
	(2) 프로그램 및 장비 업그레이드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도서관 홈페이지 운영						
	(1) 홈페이지 개편 및 신규 콘텐츠 구축	기안					○
	(2) 홈페이지 자료관리	기안		○			
	(3) 홈페이지 유지보수 사항	기안		○			
	다. 자료실 전산장비 및 S/W관리						
(1)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소모품 구입	기안		○				
(2) S/W도입 및 유지관리	기안		○				
15. 사립 작은도서관 육성	가. 작은도서관 육성 계획	기안					○
	나.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						
	(1) 작은도서관 설립 신고증 발급	기안		○			
	(2) 작은도서관 등록(변경등록) 관리	기안		○			
	다. 작은도서관 폐관 및 등록 취소	기안		○			
	라. 작은도서관 지도점검 계획	기안			○		
	마. 작은도서관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안			○		
16. 교육행정지원	가. 교육행정업무지원 및 협조사항		기안				○
	나. 규정 주요시책 관련사항	기안			○		
	다. 일반적인 사항	기안		○			

○ 경제진흥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1. 지역단위 경제 발전에 관한 종합기획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추진실적 점검평가	기안			○		
	다. 유통산업근대화 사업계획 수립		기안		○		
	라. 유통산업근대화 사업 추진	기안		○			
	마. 유통산업근대화사업 평가분석 보고	기안			○		
	바. 주민 지역경제 교육 계획 수립	기안			○		
	사. 주민 지역경제 홍보	기안		○			
2. 지역경제분야의 금융지원 업무	가. 계획수립		기안			○	
	나. 추진상황 및 현황보고	기안			○		
3.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가. 협의회 구성계획 수립		기안				○
	나. 협의회 운영	기안				○	
4. 지역단위경제동향 파악분석 및 관리	가.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분석 보고	기안			○		
	나. 지역단위 경제동향 파악분석 관리	기안			○		
5.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가. 지역물가 종합대책 계획수립			기안			○
	나. 주간물가 동향보고	기안		○			
	다. 물가모니터요원 위·해촉	기안		○			
	라.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기안		○			
	마. 물가지도 단속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바.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	기안				○	
	아.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구성		기안		○		
	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운영	기안		○			
	차. 물가대책 직장협의회 구성		기안		○		
	카. 물가대책 직장협의회 운영	기안		○			
	타. 물가안정에 관한 사무						
	(1) 가격표시의무자 지정	기안		○			
	(2) 가격표시의무자 지도단속계획 수립	기안		○			
	(3) 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그 밖에 서비스 업에 한함)	기안		○			
(4) 가격표시의무자 지도·단속보고	기안		○				
(5) 가격표시명령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6) 가격표시명령위반자 청문	기안		○			
	(7) 추진실적 보고	기안		○			
	파. 개인서비스업소 관련 업무						
	(1) 개인서비스업소 지정 관리	기안		○			
	(2) 개인서비스업소 지도 점검	기안		○			
	(3) 개인서비스요금 P/G 자료입력	기안	○				
	(4) 개인서비스업소 지도점검 결과보고	기안		○			
	하.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관련 업무						
	(1)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2)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정	기안		○			
	(3)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도점검	기안		○			
	(4) 경제살리기 선도업소 지정 운영 추진실적 보고	기안		○			
6. 대외무역에 관한 사무	가. 대외무역에 관한 사무						
	(1) 국내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 검사 종합계획		기안		○		
	(2) 지도 단속	기안		○			
	(3) 위반자 청문	기안		○			
	(4) 위반자 과태료 부과	기안		○			
	(5) 추진실적 보고	기안		○			
7.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가. 위조상품 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나. 위조상품 단속	기안		○			
	다. 위조상품 단속 결과 보고	기안		○			
	라. 위조상품 수거, 의견청취	기안		○			
	마. 고발	기안		○			
	바. 시정권고	기안		○			
	사. 과태료 부과	기안		○			
	아. 수거물품 처리	기안		○			
8. 소비자보호 및 저축의 장려	가.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기안			○		
	나. 소비자보호 계몽 및 교육	기안		○			
	다. 소비자고발센터 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기안		○			
	라. 민간소비자 보호단체의 육성	기안		○			
	마. 저축 장려 및 주민 홍보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9. 시장변영회 정관에 관한 사무	가. 산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시장변영회의 정관변경 승인	기안			○		
	나. 임원개설 승인	기안			○		
	다. 기타 사무 감독	기안		○			
10. 공설시장 관리	가. 공설시장 운영관리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점포사용료 등지 결정	기안			○		
	다. 사용허가	기안		○			
	라. 사용허가의 취소 정지	기안		○			
	마. 사용료 부과 결정	기안		○			
	바. 사용료 감면	기안		○			
	사. 시장관리인지정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기안		○			
	자. 지도감독	기안		○			
	차. 허가사항 변경	기안		○			
	카. 상속승계 신고수리	기안		○			
11.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및 취소	기안			○		
12. 대규모 점포 변경 등록	가. 대규모점포 변경등록	기안		○			
13. 대규모 점포 일반사항	가. 대규모점포 일반사항 등	기안		○			
14. 농공단지관련 사무	가. 농공단지지구지정 승인 신청		기안				○
	나. 농공단지 지구지정 변경승인신청		기안			○	
	다. 농공지구의 지정·공고		기안				○
	라. 농공단지 실시계획 승인		기안				○
	마. 농공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기안		○		
	바.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기안				○
	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신청		기안		○		
	아. 농공단지 종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기안			○	
	자. 입주기업체 협의 설립인가	기안					○
	차. 입주기업체 협의 정관변경인가	기안			○		
	카. 임원선임변경승인	기안			○		
	타. 입주기업체 협의회 지도점검	기안		○			
	파. 공동분담금 승인신청		기안			○	
	하. 공동분담금 변경승인신청	기안			○		
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	기안		○				
너. 산업단지 입주변경 계약 승인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더.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및 공장 처분신청 승인	기안			○		
	러. 임대신고수리	기안		○			
	머. 매각협의서 처리	기안		○			
	버.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기안		○			
	서.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기안	○				
	어. 재분양시 분양가격 결정	기안			○		
	저. 부실기업의 관리						
	(1) 입주기업 대책위원회 구성		기안				○
	(2) 대체입주결정		기안		○		
	처. 입주기업체 실태조사	기안		○			
	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매지원	기안		○			
	터.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지도	기안		○			
	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체 지도점검	기안		○			
	허. 폐수종말처리 시설관리						
	(1)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기안				○
	(2)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증설	기안			○		
	(3) 관리기관 지정운영계획	기안				○	
	(4) 관리운영업체 지정 승인	기안			○		
	(5) 지도감독	기안		○			
	(6) 지도감독 결과보고	기안		○			
15. 방문판매업 사무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변경신고수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지도점검결과보고	기안		○			
16. 통신판매업 사무	가. 신고수리	기안		○			
	나. 변경·폐업신고수리	기안		○			
	다. 지도점검	기안		○			
	라. 지도점검결과보고	기안		○			
17. 에너지 이용 합리화 관련 업무	가. 에너지 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기안		○			
	나.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기안		○			
	다. 열사용기자재 제조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기안		○			
18. 에너지 소비 절약 시책추진 및 홍보	가. 에너지 소비절약 종합계획	기안			○		
	나. 에너지소비절약 지도단속	기안		○			
	다. 에너지 사용 신고	기안		○			
	라. 에너지소비절약 추진	기안		○			
19.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가스안전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가스안전점검	기안		○			
	다. 안전관리자 선·해임, 퇴직신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0. 가스업체안전 점검 사후 관리	가. 가스시설 시정·명령	기안		○			
	나. 가스시설 사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가스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기안		○			
2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판매·제조·충전)허가 및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가. 고압가스사업에 관한 사무						
	(1) 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제한명령	기안		○			
	(2) 과징금의 부과·징수	기안		○			
	(3) 안전관리 규정승인 및 변경승인	기안		○			
	(4) 중간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기안		○			
	(5) 용기 등의 검사품질보장 신고	기안		○			
	(6) 고압가스운반 등의 임시영치 등	기안		○			
	(7) 안전교육 실시	기안		○			
	나. 고압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1) 고압가스냉동 제조허가	기안		○			
	(2) 고압가스냉동 제조신고	기안		○			
	(3) 고압가스냉동 제조 변경 허가	기안		○			
	(4) 고압가스 특정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5) 고압가스 일반제조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6) 고압가스 충전업 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7)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8)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다.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 사업, 저장소 설치						
	(1) 집단공급 규정승인	기안		○			
	(2)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기안		○			
	(3)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기안		○			
(4) 사업, 저장소사용 휴지·폐지신고	기안	○					
(5) 사업자등의 지위승계 신고	기안		○				
(6)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기안		○				
(7) 조정명령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22. 도시가스공급 시설 및 사용 시설에 관한 사무	가.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승인	기안		○			
	나. 도시가스공사 계획(변경) 신고	기안	○				
	다. 도시가스에 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개선명령	기안		○			
	마. 비상공급시설 설치신고	기안	○				
	바. 임시사용 신청	기안	○				
	사. 가스안전영향평가	기안		○			
23.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등록에 관한 사무	가. 공장설립 승인		기안		○		
	나. 공장증설 및 기타변경	기안		○			
	다. 공장설립 등 완료 보고	기안		○			
	라. 공장등록(변경)신고	기안		○			
	마. 공장 휴·폐업신고	기안		○			
	바. 공장과다용지에 대한 조치	기안		○			
	사. 공장설립 신고 불이행자 고발	기안		○			
	아. 공장등록증명	기안	○				
	자. 입지변경 권고	기안		○			
	차. 이전명령	기안		○			
	카. 기준 초과용지의 매각 통지	기안		○			
	타. 3헥타르 이하의 토지전용 추진 (조치지역 내 공장 설립)	기안		○			
	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안		○			
	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기안		○			
거. 광업 인·허가에 대한 협의	기안		○				
24.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사항	가.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기안			○	
25. 지역중소기업 육성	가. 지방중소기업육성 지원계획수립		기안				○
	나. 중소기업 애로상담 및 창업지원	기안		○			
	다. 중소기업 제품판로. 판매촉진 지원	기안		○			
	라. 중소기업 창업계획의 승인	기안			○		
	마. 중소기업창업 및 공장설립 민원실의 설치·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26. 제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무	가. 담배소매인 지정	기안		○			
	나. 소매인 휴·폐업신고	기안	○				
	다. 소매인영업소위치변경승인	기안		○			
	라. 담배소매인영업정지 및 지정취소에 관한사항	기안		○			
	마.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바. 소매인 지정서 재교부 신청	기안	○				
27. 제조담배 판매업에 관한 사무	가.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기안		○			
	나. 제조담배 도매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	기안		○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기안		○			
28. 석유판매업에 관한 사항	가.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기안		○			
	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기안		○			
	다.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신고	기안	○				
	라.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청·신고	기안		○			
	마. 석유판매업 위반업체 행정 및 과징금 처분	기안		○			
	바. 부정유류단속	기안		○			
	사. 일반판매소의 석유류 품질검사	기안		○			
	아.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개시(휴업·폐업) 신고	기안	○				
	자.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등록 및 변경 등록	기안		○			
	차. 지위승계 보고	기안		○			
29. 계량에 관한 사무	가.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처분	기안		○			
	나. 실량표시상품의 검사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의 계획 수립	기안			○		
	(1) 정기검사 공고	기안		○			
	(2) 소재장소 정기검사의 허가	기안		○			
	(3) 정기검사 연기	기안		○			
	(4) 정기검사 불합격 교부	기안		○			
	(5) 부정계량기의 소인 및 파훼수 거	기안		○			
	라. 계량기 정기검사(3톤 이상 눈새김) 탱크로리	기안		○			
	마. 부정계량기 지도단속 계획 수립	기안		○			
	바. 계량기 검정 및 증명업 등록	기안		○			
	사. 계량기 수시검사	기안		○			
	아. 부정계량기 단속 및 부정행위자 단속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자. 계량기 수리업 및 증명업에 관한 업무						
	(1) 등록신청	기안		○			
	(2) 등록사항의 변경	기안		○			
	(3) 등록부의 비치	기안	○				
	(4) 등록증의 재교부	기안	○				
	(5)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기안		○			
	(6) 계량증명서 교부 및 실적 보고	기안		○			
	차. 재위임 업무수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0.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공산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안전관리(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파기명령 및 위해사실 공표·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기안		○			
	다.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고·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마. 공산품 안전검증	기안		○			
	바. 공산품 품질유통 단속 계획	기안		○			
	사.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위반업체 시정명령 및 고발	기안		○			
31. 승강기 제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가.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기안		○			
	나. 승강기 검사의 지연	기안		○			
	다. 승강기 소유자 등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기안		○			
32.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무	가.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와 기술자격수 철회 회수	기안		○			
33.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가. 일반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에 관한 사무						
	(1)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및 이전에 관한 명령	기안		○			
	(2) 개선명령 미이행 설비의 전기공급 정지요청	기안		○			
	(3)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안		○			
34. 전기용품안전 관리에 관한 사무	가. 전기용품 제조업자·판매업자 등에 대한 보고의 징수 및 검사	기안		○			
	나. 전기용품의 파기 또는 수거의 명령	기안		○			
	다.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5. 노동조합지도 관리	가. 노동조합 설립신고 수리	기안			○		
	나. 노동조합 변경신고 수리	기안		○			
	다.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교부 및 보완요구 반려	기안		○			
	라. 노동위원회의결요청 및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기안		○			
	마. 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기안		○			
	바. 자료제출요구	기안		○			
	사. 노동조합 해산신고의 수리	기안		○			
	아.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36. 노동쟁의발생 행위 및 직장 폐쇄신고	가. 노동쟁의 발생 행위 및 직장 폐쇄신고		기안	○			
37. 임금 및 단체 협약신고	가. 임금 및 단체협약체결신고의 수리 및 시정명령	기안		○			
	나.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 결정 및 공고	기안		○			
	다.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 지원을 위한 신고수리	기안		○			
38. 노사분규사전 예방활동 및 대책 추진	가. 노사정 간담회 개최	기안			○		
	나. 산재환자 위문	기안		○			
	다. 근로청소년 위문	기안		○			
	라. 모범근로자 표창	기안				○	
	마. 산업평화상 추천	기안			○		
	바. 명장추천	기안			○		
39. 노사여론 (동향관리)수집	가. 노사여론사항	기안		○			
40.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가. 근로자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기안			○		
41. 「복권법」에 관한 사무	가. 「복권법」 지도점검 계획	기안		○			
	나. 「복권법」 관련 지도점검	기안		○			
	다.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접수 통보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환경보전종합 계획수립 시행	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2.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가. 주민의견수렴 공고	기안			○		
	나. 주민의견수렴 결과 통보	기안			○		
	다. 오염도 측정	기안		○			
	라. 의견 통보	기안		○			
3.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사항	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통합지 도·점검계획 수립	기안					○
	나. 설치 및 변경허가	기안			○		
	다. 설치 및 변경신고	기안		○			
	라. 행정처분(허가취소, 폐쇄명령, 사용중지 조업정지)	기안			○		
	마. 행정처분(개선명령, 경고)	기안		○			
	바. 사건송치	기안			○		
	사. 개선완료 신고	기안		○			
	아. 검사신청	기안		○			
	자. 개선명령 연기신청	기안		○			
	차. 비정상가동 신고수리 및 검사	기안		○			
	카. 배출업소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4.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가. 과세자료 조사에 관한사항	기안		○			
	나. 조정신청 처리 및 환급	기안		○			
	다. 부과고지 결정	기안			○		
	라. 납부고지서 발부 및 고지서 송달	기안		○			
	마. 독촉고지서 발부	기안		○			
	바. 징수감액·결손 결정						
	(1) 징수·감액결정	기안		○			
	(2) 결손결정	기안			○		
	아. 부과 징수 현황 보고						
	(1) 월·분기 보고	기안		○			
	(2) 결산보고	기안			○		
	자.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	기안		○			
	차.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에 따른 압류해제	기안	○				
카.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	기안		○				
5. 환경기술인 교육 선발	가. 환경기술인 교육 선발	기안		○			
	나. 교육 미이수자 처분	기안		○			
6. 자연보호보전· 보호에 관한 사항	가.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행사	기안				○	
	나. 자연보호 교육 및 홍보	기안		○			
	다. 자연보호 정화활동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7. 야생동물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가.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 지정·해제	기안					○
	나.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내 개발행위 등의 협의	기안			○		
	다. 수렵면허 관리(발급, 갱신, 정지, 취소 등)	기안		○			
	라. 수렵조수 포획 승인	기안		○			
	마. 야생 동·식물의 수출·입, 반출입 허가	기안		○			
	바. 유해 야생 동·식물 포획 구제	기안		○			
	사. 야생 동·식물의 인공증식 허가	기안			○		
	아. 박제업자 등록 및 신고	기안		○			
	자. 야생 동·식물지역의 보호를 위한 출입의 제한 등	기안		○			
8. 수도에 관한 사무	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1)지정·해제		기안		○		
	(2)시설 개보수	기안		○			
	(3)수질검사	기안		○			
	(4)관리인 교육 및 건강검진	기안		○			
	나. 물수요관리목표 종합계획 시행계획	기안				○	
	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등	기안			○		
	라. 중수도·절수설비 등 관리						
	(1)설치 결과 접수 및 확인 등 관리	기안		○			
	(2)중수도절수설비 및 절수기 설치 이행명령	기안		○			
	(3)「수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장수	기안		○			
	마. 저수조에 관한 사항						
	(1)청소업 신고(변경 등) 처리	기안		○			
(2)청소업 행정처분	기안		○				
9. 먹는물 관리에 관한 사무	가. 먹는물 공동시설의 관리 및 지정	기안		○			
	나.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개선명령	기안		○			
	다. 먹는 샘물 또는 수처리제나 그 용기·포장 등의 압류 또는 폐기와 영업자등에 필요한 조치	기안		○			
	라. 먹는물 관련 영업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보고·검사·수거 등	기안		○			
10.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가. 호소의 정기적 측정 및 조사	기안		○			
	나. 관리대상시설 또는 오염물질 처리 방법의 개선명령 및 사용중지명령	기안			○		
11. 토양환경 보전	가. 토양오염 실태 조사 및 계획수립	기안			○		
	나.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변경신고	기안		○			
	다. 특정토양 오염관리 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3. 유독물 영업자 등 관리	가. 유독물 영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유독물 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4.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가. 기타 수질 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15.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가.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기안				○
17. 저유황 유류 사용·판매사업장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	가. 저유황 유류사용·판매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8.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관리	가.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기안			○		
	나.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신고수리	기안		○			
	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19. 악취관리	가.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	기안			○		
	나. 악취배출시설 및 생활악취 지도점검	기안		○			
20.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가.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 운행차 소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 및 취소	기안		○			
	마. 확인검사 대행자 지도점검	기안		○			
	바. 공회전 제한 지도 및 단속	기안		○			
21. 특정공사 사업장 및 생활소음 관리	가. 특정공사 사전 신고 수리	기안		○			
	나.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다. 소음관리	기안		○			
23. 운행차 소음검사 및 행정처분	가. 운행차 소음검사 및 행정처분	기안		○			
25.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 및 행정조치	기안		○			
26. 생활민원 처리	가. 생활민원 처리	기안		○			
27.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가.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기안		○			
28.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가.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8.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가.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30. 공공수역 관리	가. 공공수역 오염투기자에 대한 조치명령	기안			○		
	나. 공공수역 방제조치 대집행	기안			○		
32. 각종환경오염 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사항	가. 각종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3.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					
	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기안		○			
	마.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바. 분뇨의 재활용 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4. 가축분뇨의 처리	가.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	기안			○		
	나.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및 준공검사	기안		○			
	다.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기안		○			
	마. 가축사육제한 지역내 가축사육 지도단속	기안		○			
	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기안		○			
	사. 처리시설에 대한 보고 및 검사	기안		○			
	아. 가축분뇨 관련 영업허가(변경)등록	기안		○			
	자. 가축분뇨의 재활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39.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가. 설치	기안			○		
	나. 유지관리	기안		○			
35. 하수·분뇨관련	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조정	기안					○
	나. 분뇨수집·운반업 허가 및 사업계획서	기안					○
	다. 분뇨수집·운반업 변경신고	기안		○			
	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및 관리업 등록 및 변경(휴,폐업)신고	기안		○			
	마. 영업자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49. 공중위생접객업에 관한 종합 계획수립시행	가. 공중위생 접객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기안				○
50. 공중관련 영업지도, 단속 행정처분 및 합동단속	가. 공중관련 영업지도.단속 행정 처분 및 합동단속	기안		○			
51.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등급 조정	가.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등급 조정	기안		○			
52.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교육 관리	가. 공중위생 관련업의 위생교육 관리	기안		○			
53.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가.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54.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및 재발급	가.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발급	기안		○			
	나. 이용사·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					
55. 보건행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가. 보건행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56. 학교위생 정화 구역에 따른 사무처리(공중 위생업 관련)	가. 학교위생 정화구역에 따른 사무 처리(공중위생업 관련)	기안		○			
57.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에 대한 청문 및 행정처분	기안		○			
58.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가.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59. 식품위생 관련 영업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가.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기안		○			
	나. 식품위생 위반업소 청문	기안		○			
60. 식품위생 관련 영업	가. 유흥및단란주점허가 및 신고사항	기안		○			
	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허가 및 신고사항	기안		○			
61.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업의 영업자지위승계,폐업, 재교부	가. 영업자 지위승계	기안		○			
	나. 폐업·영업신고(허가)증 재교부	○					
62.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사항 변경 신고	가. 식품자동판매기 신고사항 변경신고	기안		○			
63.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가.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	기안		○			
64. 식중독 조사관리	가. 식중독 조사관리	기안		○			
65. 식품위생업소 개인서비스요금관리	가. 식품위생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66.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위생 교육	기안		○			
67.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가.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신고	기안		○			
68.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가.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69. 조리사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가. 조리사 면허증 발급	기안		○			
	나. 조리사 면허증 재발급	○					
70.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향토음식점 우수업소,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71. 식품진흥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식품진흥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72. 집단급식소신고 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신고처리	기안		○			
	나. 지도감독 등 관리에 관한사항	기안		○			
73. 식품 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해부	가. 식품 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였다고 의심되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의 시체해부	기안			○		
74. 식품제조가공업 허가 및 변경사항	가. 허가	기안		○			
	나. 변경사항	기안		○			
75.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및 변경사항	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허가 및 변경사항	기안		○			
76. 기타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	가. 기타 식품행정에 관한 사항	기안		○			
77. 어린이 식생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기안		○			
78.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사항	기안		○			
79.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가. 공중위생업의 영업신고 등에 관한 사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80.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가.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등록, 변경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기안		○			
8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가. 과징금운용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나. 허가, 등록, 신고 및 폐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기안		○			
82. 실내 공기질 관리	가.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 계획 수립	기안			○		
	나. 실내 공기질 보고 및 검사업무	기안		○			
	다.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안		○			
83. 확인검사 대행자 관리	가.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기안		○			
84.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가. 정밀검사 미이행 차량 조치계획	기안			○		
	나. 정밀검사 안내	기안		○			
	다. 검사기간 경과 독촉 및 과태료부과 사전 통지	기안		○			
	라. 검사유효기간 연장, 정밀검사 유예	기안		○			
	마. 행정처분						
	(1) 과태료 부과	기안		○			
	(2) 검사명령	기안		○			
	(3) 검사명령 미이행자 조치	기안		○			
	바. 과태료 압류등록	기안		○			
	카. 과태료 압류해제	○					

□ 도시건설국

○ 교통행정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교통일반	가. 교통행정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수송동원 지정차량 관리	기안		○			
	다.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기안		○			
	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1) 교통유발부담금 감액결정 및 부과취소	기안		○			
	(2) 공시송달 및 체납자 압류등록	기안		○			
	마. 승용차 10부제 운영	기안		○			
	바. 교통시설물 설치 등	기안		○			
2. 교통불편신고	가. 교통불편신고 접수 처리	기안	○				
3.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가. 주차장 설치 계획	기안			○		
	나. 공영주차장설치 및 관리	기안		○			
	다. 민영주차장 과태료 처분	기안		○			
	라. 공영주차장 위·수탁사항	기안					○
	마. 공영주차장 보고·검사	기안		○			
	바. 주차장설치 등 처리	기안		○			
4. 주·정차단속 관련 사항	가. 주·정차위반 단속계획수립		기안		○		
	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이의신청	기안		○			
	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감액처분 및 부과취소	기안		○			
	라. 공시송달 및 체납자 압류등록	기안		○			
	마.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해제신청관리	기안		○			
	바. 무선기지국 설치 및 관리	기안		○			
5. 자동차관리사업 (종합·소형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가. 등록	기안		○			
	나. 변경등록	기안		○			
	다. 양도·양수, 합병신고	기안		○			
	라.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기안		○			
	마. 실태점검 및 지도감독	기안		○			
	바. 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사. 행정처분	기안		○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관련업무	가.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나.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단속	기안		○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다. 청문에 관한 사항	기안		○			
8. 화물자동차 운송 및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등	기안		○			
	다. 사업의 정지처분 및 감차명령	기안		○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마. 사업개선 명령	기안		○			
	바. 사업허가 취소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당자		실과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9. 화물자동차 운송 및 운송주선 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기안		○			
	나. 양도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등	기안		○			
	다. 사업의 정지처분 및 감차명령	기안		○			
	라. 운송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마. 사업개선 명령	기안		○			
	바. 사업허가 취소	기안			○		
	사. 과징금 부과징수	기안		○			
	아. 사업 지도·점검	기안		○			
	자. 사업 휴·폐업 신고	기안	○				
	차. 허가증 재교부신청	기안	○				
	카. 결격여부 조회	○					
	타.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확인	기안	○				
	파.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취소 및 효력정지	기안	○				
	하. 책임보험계약 등의 계약종료일의 통지	기안	○				
10. 이륜자동차 관리	가. 이륜자동차 번호지정 및 번호판 제작관리	기안		○			
	나. 이륜자동차 신고(사용, 변경, 폐지)	기안	○				
	다. 이륜자동차 등록(신규, 이전, 말소)	기안	○				
	라. 이륜자동차 구조, 장치 변경승인	기안	○				
	마. 이륜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기안		○			
11.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가. 택시(개인)운송사업에 관한 운송 시설 확인	기안		○			
12.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관한사항	가. 공사시행의 인가 신청기간 지정	기안		○			
	나. 공사시행의 변경인가	기안		○			
	다. 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기안		○			
	라. 공사완료시 시설확인 처분 또는 조치	기안		○			
	마.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용개시 기간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기안		○			
	바.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사용약관 신고 및 변경신고	기안		○			
	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 사용료 인가 및 변경 인가	기안		○			
	아. 터미널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 장	국 장	부 구 청 장	
		실무자	담당				
	자. 위치, 규모 및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	기안		○			
	차. 터미널 사업의 개선명령	기안		○			
	카. 터미널 사용명령	기안		○			
	타. 터미널 사업의 상속신고	기안		○			
	파. 터미널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합병신고	기안		○			
	하. 터미널 사업의 휴지, 폐지허가	기안		○			
	거.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13. 방치차량 강제 처리에 관한 사항	가. 무단방치차량 정리계획 수립		기안		○		
	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기안		○			
	다. 무단방치차량 공고 및 강제이전	기안		○			
	라. 무단방치차량 직권조치(폐차, 매각 등)	기안		○			
	마. 방치행위자 범칙금 부과 처분 및 청문	기안		○			
	바. 무단방치차량 범칙금 세입관리	기안		○			
	사. 방치행위자 고발	기안		○			
14. 견인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가. 견인대행업체 지정 및 명의 변경		기안		○		
	나. 견인대행업체 지도·감독	기안		○			
	다. 견인조치	기안		○			
	라. 견인반환 불응차량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견인수수료 징수 및 지출	기안		○			
15. 자가용화물 자동차 등록	가.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기안	○				
	나.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기안		○			
	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기안		○			
	라. 임대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기안		○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국 명칭 변경, 국에 두는 과 조정, 교육행정 지원 업무의 이관 및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라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 명칭 변경

- 생활지원국 → 생활경제국
- 도시경제국 → 도시건설국

#### 나. 국에 두는 과 조정에 따른 사무전결규칙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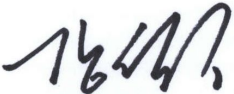
-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 생활경제국 → 총무국
- 환경위생과 : 총무국 → 생활경제국
- 경제진흥과 : 도시건설국 → 생활경제국

#### 다. 교육행정지원 업무의 이관 : 총무과 → 평생교육과

#### 라. 교통행정과 신설에 따른 사무전결 정비

- 경제교통과 사무전결 → 경제진흥과와 교통행정과로 분리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인)

2010년 3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158호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4를 별지와 각각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북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성과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본청합계			<b>378</b>		
기획 감사 실	계		<b>20</b>		
	일반직	소계	<b>20</b>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8	행정7, 시설1	
		8급	<b>6</b>	행정5, 행정·보건1	
총 무 국 과	국합계		<b>166</b>		
	총 무	계		29	
		정 무 직	소계		1
	구청장				
	일반직	소계		21	
		3급	1	부이사관1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5	
		7급	7	행정7	
		8급	3	행정3	
		9급	3	행정2, 전산1	
		기능직	소계		5
			6급	1	사무보조1
			7급	2	사무보조2
			8급	2	사무보조1, 운전1
		별정직	소계		2
	6급상당		1	비서요원1	
	8급상당		1	비서요원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회 계 정 보 과	계		<b>31</b>		
	일반직	소계	<b>25</b>		
		5급	1	행정1	
		6급	5	행정3, 전산1, 통신1	
		7급	8	행정2, 전산2, 통신1, 시설1, 행정·시설1, <b>행정·세무1</b>	
		8급	<b>8</b>	<b>행정4</b> , 전산2, 통신2	
		9급	3	행정1, 통신2	
	기능직	소 계	6		
		6급	1	운전1	
		7급	1	교환1	
		8급	2	사무보조2	
		9급	2	운전1, 교환1	
	문 화 홍 보 과	계		<b>25</b>	
		일반직	소 계	<b>21</b>	
			5급	1	행정1
6급			4	행정4	
7급			6	행정4, 행정(계약)2	
8급			<b>7</b>	<b>행정4</b> , 행정·시설1, 행정(계약)1, 공업1	
9급			3	행정1, 공업·통신(계약)2	
기능직		소 계	4		
		7급	1	기계1	
		8급	2	사무보조1, 전기1	
	10급	1	사무보조1		

구 분	직 종	직 급	정 원	직 렬
평 생 교 육 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4	
		5급	1	행정1
		6급	7	행정5, 행정·사서1, 행정(계약)1
		7급	2	행정1, 행정·사서1
		8급	8	행정2, 행정·사서3, 행정(계약)1, 사서1, 전산1
		9급	6	행정1, 사서4, 공업1
	기능직	소계	1	
		8급	1	운전1
	세 무 과	계		31
일반직		소 계	27	
		5급	1	행정1
		6급	5	행정·세무4, 세무1
		7급	9	세무7, 행정·세무2
		8급	10	세무9, 행정·세무1
		9급	2	세무2
기능직		소 계	4	
		7급	1	사무보조1
		8급	2	사무보조2
	9급	1	사무보조1	
민 원 지 적 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2	
		5급	1	시설1
		6급	4	행정2, 시설2
		7급	6	행정3, 시설2, 행정·시설1
		8급	7	행정5, 시설2
		9급	4	행정3, 시설1
	기능직	소 계	3	
		9급	3	통신1, 사무보조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생활 환경 경제 국	국 합 계		<b>82</b>		
	생	계	<b>18</b>		
	활 지 원 과	일반직	소 계	<b>18</b>	
			4급	1	서기관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사회복지1, 사회복지1
			7급	5	행정1, 사회복지4
			8급	<b>4</b>	행정2, <b>사회복지2</b>
			9급	<b>3</b>	<b>행정2</b> , 사회복지1
	사 회 복 지 과	계		14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3	행정1, 행정·사회복지2
			7급	5	행정2, 사회복지2, 시설1
			8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기능직	소 계	1	
	9급		1	사무보조1	
	경 제 진 흥 과	계		<b>11</b>	
		일반직	소 계	10	
			5급	1	행정1
6급			2	행정2	
7급			4	행정2, 행정(계약)1, 공업1	
8급			3	행정3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사무보조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환경위생과	계		21		
	일반직	소계	2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보건2, 환경1, 행정·환경1	
		7급	8	행정1, 보건4, 환경2, 공업·환경1	
		8급	6	행정1, 보건2, 환경1, 시설1, 공업·환경1	
	9급	2	환경2		
환경미화과	계		18		
	일반직	소계	12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환경1	
		7급	3	행정2, 행정·환경1	
		8급	4	행정2, 환경1, 행정·환경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6		
		6급	1	운전1	
		7급	2	운전2	
		8급	1	운전1	
9급		2	운전2		
도시건설국	국 합계		<b>110</b>		
	도시녹지과	계		24	
		일반직	소계	21	
			4급	1	기술서기관1
			5급	1	행정·시설·녹지1
			6급	5	행정1, 시설2, 녹지1, 행정·녹지1
			7급	5	행정1, 시설2, 녹지2
			8급	6	시설3, 녹지3
			9급	3	시설2, 녹지1
		기능직	소계	3	
9급	1		농림1		
10급	2		사무보조1, 운전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교통행정과	계		12	
	일반직	소계	10	
		5급	1	행정1
		6급	3	행정2, 행정·시설1
		7급	3	행정3
		8급	3	행정1, 시설1, 행정·세무1
	기능직	소계	2	
		6급	1	사무보조1
		9급	1	조무1
	건설과	계		22
일반직		소계	17	
		5급	1	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4	행정1, 시설3
		8급	7	행정3, 시설3, 행정·시설1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5	
		7급	1	전기1
		9급	2	기계1, 토목1
	10급	2	사무보조1, 전기1	
건축주택과	계		18	
	일반직	소계	17	
		5급	1	시설1
		6급	3	행정1, 시설2
		7급	5	행정2, 시설3
		8급	6	시설6
		9급	2	시설2
	기능직	소계	1	
		10급	1	사무보조1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농수산물과	계		15		
	일반직	소계	15		
		5급	1	농업·해양수산1	
		6급	3	농업2, 해양수산1	
		7급	5	행정1, 농업2, 해양수산1, 농업·수위·해양수산1	
		8급	6	시설2, 농업2, 행정·농업1, 농업·수위·해양수산1	
	시설재난관리과	계		<b>19</b>	
		일반직	소계	14	
			5급	1	행정·시설1
			6급	4	행정1, 시설1, 행정·시설2
7급			<b>6</b>	<b>행정3</b> , 시설3	
8급			4	시설2, 공업1, 통신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계	3		
		7급	1	기계1	
		8급	1	기계1	
	9급	1	사무보조1		

【별표 4】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4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	합 계		<b>73</b>			
	농 소 1 동	계		<b>10</b>		
		일반직	소계	<b>9</b>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b>3</b>	행정2,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계	1		
			10급	1	사무보조1	
		농 소 2 동	계		<b>10</b>	
			일반직	소 계	<b>9</b>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b>4</b>	행정3,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1		
			9급	1	사무보조1	

구 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	농 소 3 동	계		<b>10</b>	
		일반직	소 계	<b>9</b>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1, 행정·농업1
			8급	2	행정1, 사회복지1
			9급	<b>3</b>	<b>행정3</b>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사무보조1
		강 동 동	계		8
	일반직		소 계	7	
			5급	1	행정·시설·농업·해양수산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1, 행정·농업1,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사무보조1
	효 문 동		계		11
		일반직	소 계	9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2		
		9급	2	사무보조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 렬	
동	송정동	계		8	
		일반직	소 계	7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2	행정2
			8급	2	행정2
			9급	1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1	
			9급	1	사무보조1
		양정동	계		8
	일반직		소 계	7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2	행정2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사무보조1
	염포동		계		8
		일반직	소 계	7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1	행정1	
기능직		소 계	1		
		10급	1	사무보조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2010년도 총액인건비 확정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에 따라 정원 증원 가능규모인 총 16명에 대하여 행정수요 증가부서 등에  
대하여 정원을 배정하고자 규정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별표 1의 복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표 일부개정

- 기획감사실 : 증 1명
  - 행정 : 8급(증 1명)
- 회계정보과 : 증 1명
  - 행정 : 8급(증 1명)
- 생활지원과 : 증 2명
  - 사회복지 : 8급(증 1명)
  - 행정 : 9급(증 1명)
- 문화홍보과 : 증 1명
  - 행정 : 8급(증 1명)
- 평생교육과 : 증 5명
  - 행정 : 6급(증 2명), 8급(증 1명)
  - 행정·사서 : 8급(증 1명)
  - 사서 : 9급(증 1명)
- 교통행정과 : 증 1명
  - 행정 : 5급(증 1명), 8급(△1명)
  - 행정·시설 : 6급(증 1명)
- 건설과 : 증 1명
  - 행정·시설 : 8급(증 1명)
- 시설재난관리과 : 증 1명
  - 행정 : 7급(증 1명)

나. 별표 4의 복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일부개정

- 농소1동 : 증 1명
  - 행정 : 9급(증 1명)
- 농소2동 : 증 1명
  - 행정 : 8급(증 1명)
- 농소3동 : 증 1명
  - 행정 : 9급(증 1명)